

---

---

## 사단법인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정관

---

---

2019. 10. 26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약칭 ‘한국서총’ 혹은 ‘서총’이라 함)라 칭한다.

**2조 (목 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내규에 따라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본회는 한국서예문화의 창달과 서예발전에 기여하고, 서예국제교류 및 창작활동에 기여한다.

2. 본회는 모든 서예단체의 연합체로서 문호를 개방하고 서단의 모든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산하에는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 업)** ①본회는 전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한국서예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문헌연구 및 홍보
2. 한국서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지원, 개최
3. 한국서예진흥을 위한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교육원 설립 및 운영
4. 한국서예 창작활동 지원 및 전문간행물 발간
5.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
6. 기타 서예진흥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업

② 전항의 목적사업의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5조 (회원단체와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단체는 전국행정단위의 지회지부를 설립은

하고 있는 서예 법인체로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서예분과),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서도협회를 주축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제청 동의안 제출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단체로 한다.

②회원단체의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단체의 권리)** 본회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권

**제7조 (회원단체와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단체와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징 계)** ① 본회의 회원 및 회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 자격정지,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②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2. 자격 정지
3. 경 고

**제9조 (재심청구)**

1. 제8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회원 및 회원단체는 징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 처분한 회원단체에 대하여 복권 및 복귀시킬 수 있다.

**제10조 (포 상)** 본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회원단체 또는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이 사 : 9인 이내(회장 포함)
3. 감 사 : 3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본회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 임원의 선출과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임기를 개시 한다.

② 이사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당연직이사가 되고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임기 중 회원단체장의 변동이 있을 때 전임단체장의 잔여임기는 보전한다)

③ 감사는 이사의외 인사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은 그 직에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된 때에는 그로부터 해당임기를 개시한다.

3. 본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해임)** 본회 임원이 직무유기 및 이 정관의 위반 또는 본회의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 2항에 의한 변경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한다. 회장은 본회의 대외적인 대표로 활동하며 본회의 중요사업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1. 고문위원 : 본회의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 : 덕망이 있는 서단의 원로로 구성한다.

3. 본회의 고문과 자문위원은 서예진흥재단의 정책자문위원을 겸한다.

4.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 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1조(대의원총회)** 회원단체의 회원의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 총회로 총회를 갈음한다.

② 대의원은 각 회원단체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추천대의원수는 각 회원단체별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는 20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구 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 대리참석은 할 수 없다.

**제23조 (개 회)**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회장과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4조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1. 정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삼분의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 또는 모바일 서신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한 동일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위임받은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의결에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 (서면결의)** 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장 특별위원회

**제27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예진흥정책포럼, 서예

진흥재단, 한국서예관 건립 추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본회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조(회계 및 운영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한다.

**제36조(공고방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7조(기부금의 공개)**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8 장 사무처

**38조 (사무처 설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직 원)** 본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 인사, 보수, 복무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사무처의 관리)**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41조 (보 수)** 1.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2. 사무처 직원의 보수액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9 장 보 칙

**제42조 (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해산신고서
2.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3.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
4. 해산당시의 정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제43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 (주무부처의 장 검사, 감독)** 본회의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할 때에는 관 ,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사무 및 재산 상황을 주무부처의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5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6조 (규정 및 내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국내외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시행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7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8조(제규정의 제·개정)**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 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6길 36, 209호”로 한다.

**3조(경과조치)**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및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인감날인
발기인 (회장)	권창윤	1943.05.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21길 10	2년	
발기인 (이사)	윤점용	1960.01.0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47	2년	
발기인 (이사)	권인호	1959.01.03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01, 113동 1301호	2년	
발기인 (이사)	한태상	1952.07.1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38-19	2년	
발기인 (이사)	강대희	1957.1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1길 28, 112동 902호	2년	
발기인 (이사)	김영기	1947.03.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1길 23, 602호	2년	
발기인 (감사)	이영순	1952.05.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9, 111동 901호	2년	
발기인 (감사)	신현진	1947.10.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3길 15	2년	

[ 1 ]

본 재 산 목 록

재산구분(지목별)	수량(m <sup>2</sup>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	50,000,000	
<b>【합 계】</b>	1	50,000,000	